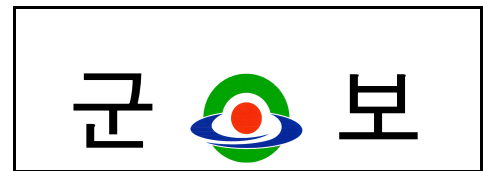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133호 2018. 12. 6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훈 령

- 예천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정(예천군 훈령 제403호)
- 예천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(예천군 훈령 제404호)
- 예천군 비지정문화재 보수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(예천군 훈령 제405호)

예 규

- 예천군 환경미화원 근무 지침 일부개정지침(예천군 예규 제17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예천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18년 12월 6일

예 천 군 수

예천군 훈령 제403호

예천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정

제1장 총무과

제1조(「예천군 보안업무 요강」의 개정) 예천군 보안업무 요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행정자치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한다.

제21조제2항 중 “행정자치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한다.

제53조제1항 중 “행정자치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한다.

제2장 안전재난과

제2조(「예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·운영 규정」의 개정)

예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·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호 중 “행정자치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제1장 총 무 과

① 예천군 보안업무 요강

현행	개정안
제3조(보안담당관) ① (생략)	제3조(보안담당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정보통신 분야와 공간정보 분야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<u>행정자치부</u> 의 「정보보안지침」과 행정자치부의 「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」에 의거 정보통신보안담당관과 공간정보보안담당관 제도를 운영하되, 정보통신 관련 업무와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관하여 보안담당관의 직무를 수행한다.	② ----- ----- ---- <u>행정안전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21조(비밀분류지침) ① (생략)	제21조(비밀분류지침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분류지침 이외에 따로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 및 재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경상북도를 거쳐 <u>행정자치부장관</u> 에게 건의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행정안전부</u>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53조(보안사고 보고) ① 다음	제53조(보안사고 보고) ① ----

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휘계통을 통하여 <u>행정자치부장관</u>(보안담당관 참조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략) ②·③ (생략)	----- ----- --- <u>행정안전부</u>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--	--

제2장 안전재난과

② 예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·운영 규정

현행	개정안
제7조(의견수렴 및 협의) 영상기기를 신·증설, 목적 변경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센터업무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, 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 제2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 다만,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. 1. ~ 3. (생략) 4. 군수는 개인영상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<u>행정자치부장관</u>과 협의하여야 한다.	제7조(의견수렴 및 협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<u>행정안전부</u>----- ---.

예천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18년 12월 6일

예 천 군 수

예천군 훈령 제404호

예천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

예천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

부서별 근로자 정수의 직종별 책정내역(제11조제3항 관련)

부 서 명	직 종 명	정수	직무내용
총 계		<u>140</u>	
본 청 소 계		<u>91</u>	
기 획 감 사 실	행정보조원	1	홍보업무 보조
	행정보조원	1	비서요원
총 무 과	행정보조원	1	비서요원
	행정보조원	1	행정업무 보조
	단순노무원	<u>1</u>	청사관리(청소)
주 민 복 지 과	행정보조원	12	사회복지 업무 보조
문 화 관 광 과	단순노무원	6	온천장관리
환 경 관 리 과	행정보조원	1	행정업무 보조
	환경미화원	54	청소업무
	단순노무원	2	야생동물감시원
농 정 과	행정보조원	1	농지관리보조
산 림 축 산 과	행정보조원	1	가축방역업무보조
건 설 교 통 과	단순노무원	1	가로등기동수리반
	도로보수원	7	도로보수
	단순노무원	1	주정차단속보조
직속기관 소계		<u>29</u>	
보 건 소	행정보조원	<u>20</u>	보건업무보조
농업기술센터	행정보조원	1	농촌지도 업무보조
	단순노무원	4	농기계수리보조
	단순노무원	4	생균제 및 토양검정보조

부 서 명	직 종 명	정 수	직무내용
사업소 소계		<u>16</u>	
문화체육사업소	단순노무원	2	수영강사 및 안전요원
	단순노무원	1	청소년지도사
	단순노무원	<u>4</u>	수련관 매표 및 시설관리
	단순노무원	2	시설물관리(양궁장,문화회관)
곤충연구소	단순노무원	7	호박벌 및 정서곤충사육, 꿀벌육종, 생태원 관리
의 회 소 계		2	
의 회	행정보조원	1	비서요원
	단순노무원	1	청사관리
읍 면 소 계		2	
예 천 읍	단순노무원	1	청사관리
	행정보조원	1	행정업무 보조

부서별 청원경찰 정수

부 서 명	계	경 비 청원경찰	감시·단속 청원경찰				비고
			소계	불법산림 훼손행위	상수도 보호 구역관리	하천감시 및 골재채취	
계	8	<u>1</u>	<u>7</u>	<u>1</u>	2	4	
총 무 과	<u>1</u>	<u>1</u>					
산림축산과	<u>1</u>		<u>1</u>	<u>1</u>			
환경관리과	2		2		2		
안전재난과	4		4			4	

예천군 비지정문화재 보수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18년 12월 6일

예 천 군 수

예천군 훈령 제405호

예천군 비지정문화재 보수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

예천군 비지정문화재 보수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

비지정문화재 분야별 세부항목 및 항목별 보수예산 지원기준
(제3조와 관련)

구 분	세부항목	지 원 기 준	비 고
건조물	가옥	- 총사업비 8천8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의 80%이내를 군비로 지원(20%이상 자부담) ※ 초과비용은 자부담	
	루·정		
	사묘		
	비각		
	사찰		
	서원·서당		
	성황당		
	그 밖의 건조물		
석조물	석불	- 개인 및 사찰 소유는 소유자가 부담 보수 -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군에서 보수 - 군에서 관리하기가 부적절할 경우 인근 사찰이나 박물관 등에 이전하여 보관하는 방안을 마련	
	비		
	부도		
	석등		
	석탑		
	그 밖의 석조물		
기 타	사지	- 개인 및 사찰 소유는 소유자가 부담 보수 -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군에서 보수	
	성		
	봉수		
	보호수		
	서화		
	불상 등		

※ 공익과 공동체 성격의 비지정문화재를 보수하는 경우 재정여건에 따라 군수가 판단하여 예산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.

예천군 환경미화원 근무 지침 일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18년 12월 6일

예 천 군 수

예천군 예규 제17호

예천군 환경미화원 근무 지침 일부개정지침

예천군 환경미화원 근무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호를 제5호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별표와”를 “별표 1과”로 한다.

제19조 제목 “(환경미화원의 징벌)”을 “(환경미화원의 징계처분)”으로 하고,
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징벌”을 “징계처분”으로 한다.

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

환경미화원 작업 및 휴게시간(제10조제2항 관련)

구 분	시업시간	휴게시간	종업시간	비 고
I 권역(읍), III 권역(신도시), 매립장 근무자	06:00	08:00~09:00 12:00~13:00	16:00	권역별 근무 여건에 따라 조정 할 수 있음
II 권역(용문, 효자, 은풍), III 권역 (감천, 보문, 호명), IV 권역(유천, 용궁, 개포), V 권역(지보, 풍양)	06:00	08:00~09:00 12:00~13:00	16:00	

【별표 2】

환경미화원 징계처분기준(제19조 관련)

구 분	위 반 사 항	처 분 기 준			
		경 고	견 책 (시달서)	감 봉	정 직
발생시	직무를 이용하여 군의 물품을 횡령한 사람(5만원 미만)			1회	2회
	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(300만원 미만) 및 선거법 위반(100만원 미만)으로 확정판결은 받은 사람			1회	2회
	금품요구 및 수수행위(5만원 이상)			1회	2회
년단위	금품요구 및 수수행위(5만원 미만)		1회	2회	3회
	동료간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수수 또는 각출 행위		1회	2회	3회
	폭행 등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		1회	2회	3회
	군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람		1회	2회	3회
	동료 간의 근무를 방해하거나,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		1회	2회	3회
	근무 중 주민 등에게 행패 및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		1회	2회	3회
	무단결근		1회	2회	3회
	근무 중 음주 및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한 사람		1회	2회	3회
	근무지 무단이탈		1회	2회	3회
	청소팀장의 지시사항에 불이행한 행위	1회	2회	3회	4회
	수거한 폐기물을 무단투기·소각하는 행위	1회	2회	3회	4회
	근무태만	1회	2회	3회	4회
	근무시간 미 준수	1회	2회	3회	4회
	담당구역 청소 불량	1회	2회	3회	4회
	품위손상	1회	2회	3회	4회
	복장위반	1회	2회	3회	4회
	장비 및 비품관리 소홀	1회	2회	3회	4회
	안전수칙 등 준수사항 불이행한 사람	1회	2회	3회	4회
처분 등의 기준	1. 종합처분 : 각각의 처분결과를 합산하여 1년간 중징계 3회 이상 “해고” 2. 동시에 여러 개의 위반행위가 경합 시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한다. 3. “년”은 행위 발생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으로 한다. 4. “음주운전 사건”의 경우 예천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71조(별표3의1) 유형별 처리기준에 따라 처분한다.			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안전수칙의 준수)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략) 4. (생략)	제6조(안전수칙의 준수) ----- ----- ----- 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제10조(근로 및 휴게시간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<u>별표와</u> 같다. ③·④ (생략)	제10조(근로 및 휴게시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별</u> ----- <u>표 1과</u> --. 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19조(환경미화원의 징벌) 환경미화원의 <u>징벌</u>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.	제19조(환경미화원의 징계처분) ----- <u>징계처분</u>----- ----- -----.